

학교규칙

제정 2011. 7. 11, 행정과 - 10178 호
1차 개정 2012. 3. 1.
2차 개정 2013. 3. 1.
3차 개정 2016. 4. 1.
4차 개정 2017. 4.11.
5차 개정 2021. 4. 9.
6차 개정 2022.11. 1.
7차 개정 2023.10. 5.
8차 개정 2024.7.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다솜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남로 1146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본교의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전공과 2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 ① 초등학교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초등학교의 학령에 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배치된 자로 한다.
- ② 중학교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배치된 자로 한다.
 1. 특수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2.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 ③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배치

된 자로 한다.

1.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2. 중학교를 졸업한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 ④전공과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도교육청 전공과 입학전형계획에 따른다.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수) 본교의 각 과정별 학급수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제7조(학생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수업운영 · 평가

제8조(교육과정)

-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②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수업량 기준은 학점으로 적용하고,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총 이수 학점인 192학점 이상을 균형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제9조(수업일수)

- ①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②천재지변, 비상재해, 감염병 예방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휴업 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운영 관련)

-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에 의거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 사업체 등의 의견과 여건을 고려하여 진로 · 직업교육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교외체험학습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교류체험학습(개별위탁 체험학습, 집단 교류 · 해외

체험학습, 호도·방문 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③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일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간은 추진계획을 세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4.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 5.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④현장실습(지원고용 포함)은 학생, 학부모, 사업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교과와 비교과를 통합하여 수업으로 인정한다.

⑤제4항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이하 ‘현장실습(취업)규정’ 이라 한다) 및 당해연도 현장실습 계획서로 정한다.

⑥전공과 학생이 수습 기간 종료 후 취업이 확정된 경우 학적을 유지한다.

제11조(평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5장 학년·학기말·휴업일·과정수료·졸업

제12조(학년, 학기)

-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한다.
- ②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③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 의거하여 중학교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며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④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휴업일)

- ①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일휴업일
 4.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5. 학교장재량휴업일
- ②제1항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③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수료·졸업)

-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초·중·고·전공과의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학교장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공과 해당과정의 전 학년을 수료한 자에게 졸업장 및 수료증을 수여한다.
- ④전공과 학생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학적을 제적처리한다.

제6장 입학·전학·재취학

제15조(입학)

- ①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본교의 입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단 전공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학교장이 선발한다.
- ③전공과의 학생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6조(전학) 학생이 전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재취학)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배정받은 자로 하되 학년은 유예(면제)당시의 학년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취학유예·취학면제 등

제18조(취학유예)

- ①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의무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관할교육장에게 취학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예가 결정된 자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에 1년 이하로 한다.
- ④유예한 자의 재 취학 시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익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⑤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관할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취학유예를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출석 독촉·경고·통보) 출석 독촉·경고·통보에 관한 사항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제20조(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설치)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의 결정에 관한 심의, 미취학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1조(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생의 학력인정과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21148호 2012.10.29.)’에 의한다.

제22조(조기진급자의 환원조치) 조기진급 후 학업능력, 생활면에서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기진급 시행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9장 휴학, 자퇴

제23조(휴학)

- ①전공과 과정에 한하여 질병 등 건강 상 이유로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증빙서류는 휴학원, 진단서(가정요양서) 또는 친권자의견서, 담임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1회에 한한다.

④휴학 신청 시 필요한 사항을 개별화전환교육지원팀에서 협의한다.

제24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 신학년이 시작할 때 복학 신청을 해야 하며 휴학 시의 해당학기로 복학할 수 있다.

제25조(자퇴)

-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하려는 자는 전공과 과정에 한하여 자퇴원과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친권자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자퇴원, 친권자의견서, 담임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27조(학업중단숙려제)

- ①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1장 학생포상 및 징계 등

제28조(학생생활규정)

- ①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②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학생포상)

- ①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0조(훈육·훈계방법)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징계)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32조(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12장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용 도서대

제33조(수업료 등) 입학금·수업료·교과용도서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본교 재학생은 무상으로 한다.

제13장 기숙사

제34조(기숙사 입사)

-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한다.
- ②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14장 학생자치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 ①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거 학생 자치회를 조직·운영한다.
- ②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5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36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①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②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중 학생 및 학부모의 불법녹취(녹음)을 금지하며 교권침해 상황 발생 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6장 장애인 차별 금지

제37조(차별금지)

- ①학교장은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학교는 장애학생이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체험학습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학교장 및 교직원원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인력,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학교장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의 통학 및 학교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제39조(개인정보보호)

- ①장애학생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40조(문학·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①장애학생이 문학·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1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①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학생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장애학생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2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장 학칙 개정

제43조(학칙의 개정)

- ①학칙은 교무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과 학생자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4조(시행규칙)

- ①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안내 및 연수)

- ①개정된 학칙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②개정된 학칙에 대해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부 칙(2011. 7. 11. 행정과 - 10178 호)

1. 본 학칙은 201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2012. 3. 1.)

1. 본 학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2013. 3. 1.)

1. 본 학칙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2016. 4. 1.)

1. 본 학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17. 4. 11.)

1. 본 학칙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1. 4. 9.)

1. 본 학칙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2. 11. 1.)

1. 본 학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3. 10. 5.)

1. 본 학칙은 202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4. 7. 18.)

1. 본 학칙은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